

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국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, 직원 및 기타 산학협력 활동에 종사하는 자(이하 “교직원등”이라 한다)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산업자문”이라 함은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등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“산업체등”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도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기술지도”는 산업체등에 기술의 개량·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도 및 노하우 제공 등을 말한다.
3. “경영지도”는 산업체등에 업무 효율화와 경영활동 등에 대한 의견 및 노하우 제공 등을 말한다.
4. “디자인지도”는 산업체등에 디자인의 개선·개발 등을 위한 의견 및 노하우 제공 등을 말한다.
5. “컨설팅”은 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이외 산업체등에 제공하는 전문적 의견 및 노하우 제공 등을 말한다.
6. “산업자문료”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산업자문 방법 등)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본교 교직원등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산업자문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, 본교 교직원등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단, 자문내용 중 산업체등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입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4조(산업자문료 납부)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

야 한다.

②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 분야에서 적용되는 적정수준에서 산업체등과 본교 교직원등이 협의하여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.

제5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 ① 산업자문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한다.

1. 부가가치세액 공제 후 금액에 대해 1천만원까지는 산업자문에 참가한 본교 교직원등이 97.75%를, 산학협력단에 2.25%를 분배한다.

2. 부가가치세액 공제 후 금액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업자문에 참가한 본교 교직원등이 95.5%를, 산학협력단에 4.5%를 분배한다.

② 납부된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결과 보고서 제출 후 전항에 의거하여 분배 지급한다.

제6조(실적평가반영) 산업자문 실적은 본교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,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기타사항) 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
②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계약서 및 산업자문 결과보고서는 별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산업체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산업자문 신청서					
지원분야 (해당분야선택)	기술지도 / 경영지도 / 디자인지도 / 컨설팅				
신청기관 (업체)	기관(업체)명		대표자		
	담당자		연락처		
			e-mail		
	주소				
희망자문기간	20 ~ 20 (총 시간)		산업자문료 (단위: 원)		
산업자문 주제					
본교 교직원 등 (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기재)	성명	학과/부서	연락처	참여율 (100%)	비고
현재의 문제점					
산업자문 희망사항					
성공시 기대효과					
기타 제안					

위와 같이 산업자문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기관: 대 표 자 : (인)

(사전에 선정된 경우) 국민대학교 교직원등 : (인)

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산업자문 계약서

계약자	대 학	기관명	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		사업자 등록번호	209-82-08395
		주 소	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(정릉동, 국민대학교 내)		전화번호	02-910-
		대표자	임 홍 재		FAX	02-910-4030
	신청기관 (업체)	기관명			사업자 등록번호	
		주 소			전화번호	
		대표자			FAX	
	자문 책임자	소 속	국민대학교		직위(직종)	
학과/부서				성 명		
계약 내용	자문계약명	○○○○○○에 관한 산업자문				
	계약기간	20 . . . ~ 20 . . .				
	자문료	총액 만원정 (₩)				
		선금	일금 만원정 (₩)			
		잔금	일금 만원정 (₩)			

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○○○은 위 산업자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,
‘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’에 반하는 사항은 그 효력이 없는
것으로 본다. 본 계약의 증명을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기명, 날인한 후
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

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임 홍 재 (인)

국민대학교 자문 책임자 : (인)

신청기관(업체)명: 대표자 : (인)

<별표 3>

산업자문 결과보고서

지원분야 (해당분야 선택)	기술지도 / 경영지원 / 디자인지도 / 컨설팅		
신청기관(업체)명			
자문일시(기간)	20 . . . ~ 20 . . . (총 시간)	산업자문료 (단위: 원)	
산업자문 주제			
자문 내용 및 결과			
위의 산업자문 결과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. 기관(업체)명 : 대표자 : (인)			

위와 같이 신청기관(업체)에게 산업자문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20 . . .

소속 : 직위 : 성명 : (인)

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